

#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비구속적 지침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이 자료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호의로 제공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 ■ 머리말

도하 선언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2015년 제13회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정의를 위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도하 선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의하여 발족되었다. 도하 선언은 “유엔반부패협약에 따라, 부패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공공 행정의 투명성 향상과 형사사법제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한 조치의 실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그램의 사법청렴성 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 계획이 지난 2018년 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 설립이었다.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는 각 국의 사법부가 사법청렴성을 강화하고 사법시스템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2018년 4월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 발족식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계의 법관과 기타 사법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네트워크 발족식 종료시에 네트워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채택된 사법청렴성에 대한 선언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동 선언은 새로운 정보 기술 도구와 소셜미디어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법관이 사법청렴성과 독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안내자료와 다른 지적 생산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는 (a)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사법부에 영감을 주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b) 법관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일련의 국제적, 비구속적 지침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에 전문가집단 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렸고, 법관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에 마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해에 전세계적인 설문조사가 시작되었다.

다음의 내용과 권고는 전문가집단 회의에서의 토론, 위 설문조사의 결과, 그리고 네트워크 참석자들의 광범위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되었다.

##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비구속적 지침

### ■ 서문

소셜미디어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며, 전파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사회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다.

법관 직무의 본질 및 법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은 해결되어야 하는 특정 문제 및 윤리적 위험을 야기한다.

법관 역시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 신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지만, 법관은 항상 법관직의 위엄을 지키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법관 개개인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든 법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이라는 주제는 매우 복잡하다. 한 편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법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당 법관이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편향되었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도출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는 법관의 전문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사법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법관에 대한 모욕이나 괴롭힘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예도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은 법관 개개인의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핵심 가치-독립성, 공정성, 청렴성, 적절성, 평등, 능력과 성실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도, 법관은 항상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및 첨부된 상세한 주석에 제시된 행동규범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이 성안될 당시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창출할 수 있는 고유한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고, 각각의 플랫폼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방식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플랫폼들의 내용, 종류, 사용 빈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대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본질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법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증가를 촉진시킨다. 이는 무엇보다도 편면적 의사교환(ex parte communications), 편향 또는 편견, 외부의 영향력에 관련된 규칙과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친구추가’, ‘팔로잉’과 같은 개념은 보통 그 개념의 전통적인 의미와 차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뉴스 칼럼니스트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와 독자 또는 구독자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정도가 보다 사적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세심한 주의 및 가능한 경우 공개, 제척, 기피, 회피 또는 그 밖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관계에서 확립된 것과 유사한 다른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의 많은 부분은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본질과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들 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법관과 사법부(그들의 행동이 사법청렴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직 인사와 법원 직원들을 포함)에 지침을 제공하고, 법관 행동과 윤리에 관한 국제적, 지역적 기준 및 기존 법관행동준칙에 부합하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법관들을 안내하고 연수할 방법에 관한 광범위한 기본 틀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 법관에 대한 맞춤형 지침과 연수 제공 시 문화와 법적 전통의 차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 ■ 법관의 소셜미디어 인식, 사용에 관한 위험과 기회

1. 법관이 시민 및 사법적 역할 모두에 있어서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처럼 온라인 활동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시대에 법관들이 소셜미디어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사법적 참여의 공적 이익은 사법부에 대한 공신력,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와 사법시스템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을 비롯하여 법관행동과 윤리에 관한 현존하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규칙, 기준 및 협약은 법관의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디지털 생활에까지 적용된다. 소셜미디어는 흥미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을 열고 있고, 뱅갈로어 준칙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적용되는 바, 법관은 그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관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법관의 재량을 알려주는 추가적인 준수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한 기술매체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셜미디어 사용 여부와 별개로 법관은 소셜미디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는 법관이 재판하는 사건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법관은 AI 기술을 포함한 현존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법관은 소셜미디어의 사적 사용에 있어서 법관뿐만 아니라 가족, 가까운 친구, 법원 직원들에 의한 소셜미디어 사용의 이점, 위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연수를 받아야 한다.

5. 개별 법관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 법관 직무의 도덕적 권위, 청렴성, 예의, 위엄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법관은 온라인 형태의 표현과 집회의 실질적 측면을 인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더 큰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 또는 확대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더 큰 범위와 진술의 영구성 증대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작고 일상적인 행위('좋아요'와 같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정보의 전달에 관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다.
7. 사법부는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관은 법원 또는 사법부의 소관 부서가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제시한 기회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8. 법관은 뱅글로어 법관행동준칙과 그 주석에 정한 바에 따라 대중과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적인 자문에 관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에 더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9. 법관은 소셜미디어 사용 수준이 사법 업무를 능숙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개인적 사용과는 달리) 기관 차원에서의 법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a) 사법에 대한 접근, (b) 사법행정, 특히 사법효율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 (c) 책임성, (d) 투명성 및 (e) 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 이해, 존중 등의 이슈를 홍보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1. 소송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생성하고자 하는 법원은, 법원 사용자가 그러한 포털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 집계 관행과 관련하여- 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소셜미디어에서 법관의 신분공개

12. 적용 가능한 윤리적 기준과 기존 규범에 반하지 않는 경우 법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실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법관이라는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13. 본 지침의 성안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법관의 익명 사용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본 지침은 익명 사용을 권장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법관은 소셜미디어에서의 행위에 있어 그들의 직업과 관련한 모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은 소셜미디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익명의 사용은 그 실명이나 사법적 지위가 알려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14. 법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적인 신분과 직업적 신분을 분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적절한지 이해하는 것은 법관 연수에 적합한 영역일 것이다.

## ■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와 행동

15. 법원의 존엄과 재판의 공정성 및 공평성에 관한 현존하는 원칙들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6. 법관은 온라인상에서 사법의 독립성, 진실성, 적절성, 공정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위 원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실명이나 법관의 신분을 밝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17. 법관은 그들이 맡고 있는 사건 혹은 앞으로 다루게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셜미디어 사이트 혹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건당사자, 그들의 대리인 혹은 일반 대중과 의견을 교환하여서는 안 된다.
18. 법관은 어조와 언어면에서 신중해야 하며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모든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각 항목(예: 게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 상태 업데이트, 사진 등)과 관련하여,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법관의 존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업로드 한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반응할 때도 동일하게 주의해야 한다.
19. 법관은 타인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며, 타인의 우려를 경시하거나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0. 소셜미디어는 당사자들을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법원 또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일부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훨씬 용이하게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러 사법권역의 증거법칙에 따라, 법관은 당사자 또는 증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또는 그러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법관은 자신이 임명되기 전에 생성한 디지털 콘텐츠가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나 일반적 차원의 사법부의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관은 해당 내용의 공개 및 삭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법권의 적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규칙이 없다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지, 삭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22. 법관이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경우, 바로 대응하는 것을 삼가고 사법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사법부 내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법부는 법관이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나 욕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법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팔로우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와 논평가를 팔로우 하는 것은 '반향실 효과(echo chambers)'를 방지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이익단체, 캠페인 또는 논평가와의 상호작용이 법관 개인의 공정성이나 사법부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면, 법관은 이들을 '팔로우'하거나 이에 대하여 '좋아요' 표시를 하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24. 법관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이나 제3자의 재정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온라인에서의 친구 및 관계

25. 법관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친구추가', '팔로잉' 등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통적인 개념보다 친밀하거나 관여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또는 그 밖의 경우에 상호 작용의 정도가 보다 사적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 변할 경우 법관은 맹목적으로 법관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세심한 주의, 공개, 제척, 기피, 회피 또는 그 밖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관계에서 확립된 것과 유사한 행동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26. 법관은 과거와 현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과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법관은, 특히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팔로워/친구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에티켓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28. 법관이 주의를 기울여 온라인 친구 관계 및 인맥을 형성하고 온라인 친구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신중하고 현명한 행동이다.



29. 온라인 관계나 게시물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법관은 검증된 소셜미디어 전문가나 사법부에 마련된 법관윤리 자문기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법관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친구 요청을 수락하거나 그들에게 친구 요청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셜미디어 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나 기타 알려진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1. 법관은 직계 친족, 가까운 친구, 법원 관계자 등에게 법관의 윤리적 의무의 내용 및 소셜미디어의 사용방법에 따라 위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절히 알리는 방법을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32. 개인, 직업 및 기관의 청렴성과 보호를 위하여 법관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규칙, 설정방법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3. 설정방법에 관계없이 법관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기타 공개되면 곤란해지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어떠한 코멘트나 행위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 권고된다.
34. 법관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개인정보 공유의 위험성과 적절성을 인식해야 한다. 법관은 특히 자신의 위치 또는 기타 유사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직·간접적으로 공개하여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신상정보 및 보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법관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족, 친구, 직원 등의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35. 법관은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사용 뿐 아니라, 법관이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어떤 정보를 제공 받았고 누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지에 따라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36. 소셜미디어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법관은 대중 앞에서 행동에 조심하여야 한다.
37. 법원과 사법부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법관 연수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활성화시켜 법관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법관연수

38. 법관에게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적절한 문제와 이슈를 다루는 주기적인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관련 주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시중에 제공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종류
  - (2) 이와 같은 플랫폼이 운영되는 방법
  - (3)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 (4) 그와 같은 참여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 결과
  - (5) 법관들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사법부의 독립, 법관직의 위엄,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6) 법관의 가족들이 법관이 보안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 (7) 법원 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 사법부의 청렴성, 공정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8) 소셜미디어를 통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법정에 현출된 증거가 아닌 사안에 대한 조사를 피해야 하는 이유
39. 이와 같은 연수는 신임법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수는 경력법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40. 필요에 따라 질문과 조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대외비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그와 같은 조언과 지침을 익명으로 편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관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를 준비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도 있다.



The Doha Declaration:  
**PROMOTING A CULTURE  
OF LAWFULNESS**



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